

# 디자인공지증명

디자인 등록·출원 전 창작물에 대한 디자인 공지사실 증명을 통하여  
디자인침해를 사전에 예방합니다.



<http://drights.kidp.or.kr>

## 디자인공지증명은?

디자인 창작물의 권리보호로 디자인기업 및 디자이너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,  
디자인비즈니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건강한 창작환경 조성을 위한 권리보호 서비스입니다.

## 추진배경

1

###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극적 대응의 개선필요

수많은 디자인들이 포트폴리오,  
블로그 등을 통해 게재되고 있으나  
디자인등록 출원 또는  
제품화되지 않은 디자인의 경우,  
이와 유사한 디자인들이 난립

2

### 창작자의 권리침해 대응

디자인권으로 출원되지 않은  
디자인들은 디자인보호법의 보호 및  
저작물로서의 인정이 어려우며,  
디자인 모방 및 표절에 노출

3

### 최소한의 보호장치 필요

법적영역에서 상대적 약자로  
분류되는 중소기업이나  
독립디자이너 등의 권리를 위한  
최소한의 보호장치

문의 |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육성실 031-780-2234 / [drights@kidp.or.kr](mailto:drights@kidp.or.kr)



산업통상자원부



한국디자인진흥원

# 디자인공지증명

## 공지증명의 장점

### 1. 비용절감 및 모방방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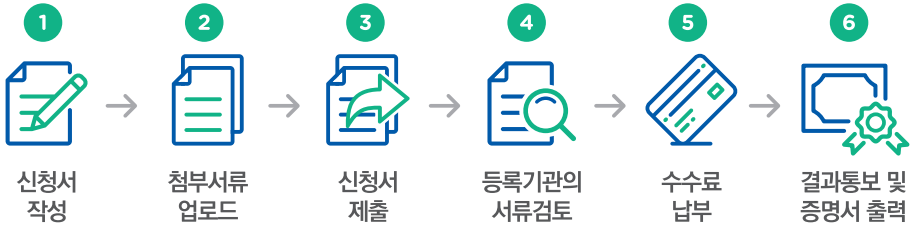
디자인 등록출원 전 디자인 창작사실(창작자·시기) 증명제도로 디자인등록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디자인모방(Dead Copy)의 출원등록 방지

### 2. 특허청 디자인권 심사 자료



공지증명된 디자인은 특허청 디자인권·특허 심사시 창작사실 증거자료로 활용되어 의무권리자의 디자인 무단등록으로 인한 디자인 침해 피해 예방

## 신청절차



## 디자인등록과 디자인공지증명 비교

구분	디자인등록	디자인공지증명
목적	· 독점 배타적인 디자인권 발생	· 공지사실 증명
처리기간	· 출원 후 6개월 내외	· 짧음(1~3일)
권리범위	·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(디자인보호법 제92조)	· 독점 배타적 권리 없음 · 등록 후 12개월 이내 디자인출원한 경우 디자인권(재산권) 확보 가능
신청절차	· 출원인이 출원수수료 납부와 함께 디자인등록 출원서 제출 · 실체심사를 거쳐 등록 결정 후 설정등록료 납부를 통해 디자인권 발생	· 디자인을 파악할 수 있는 간단한 도면과 신청서만을 제출 - 실체심사 과정이 없으므로 절차 간단
비용	· 출원비용 : 94,000원 · 설정등록료(1~3년분) : 75,000원 · 연차등록료 : 4년 후부터 3년 단위로 누진제	· 20,000원/건, 대학생 이하는 무료 (변리사 대행 불필요, 직접 등록 가능)
보호기간	· 존속기간 20년	· 부정경쟁방지법의 경우 창작일로부터 3년간